



제432회국회(임시회)
제 1 차 교 육 위 원 회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학급당 적정 유아 수 기준 마련 〉

■ 이훈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315호)

2026. 2.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윤상열

【 목 차 】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학급당 적정 유아 수 기준 마련	2
[참고자료]	9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이훈기의원 등 14인

2. 발의연월일 : 2025. 12. 17.

3. 회부연월일 : 2025. 12. 1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급편성 등 수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고, 시행령에 따라 학교의 학급 수 및 학급당 학생 수는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관할청이 정하고 있으므로 지역별로 적정한 학급 규모의 기준이 달라 학급 규모에 있어 지역 간 편차를 보이고 있음.

그런데 학급당 적정한 유아 수는 유아의 학습권과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한 지표에 해당하므로 적정 학급 규모의 기준을 마련하고 학급당 적정 유아 수를 유지·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은 학급당 적정 유아 수의 기준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고시하고, 교육감은 학급당 적정 유아 수 유지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유아의 학습권과 쾌적한 환경을 적극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학급당 적정 유아 수 기준 마련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교육부장관에게 교육통계조사를 바탕으로 학급당 적정 유아 수의 기준에 관한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고시하도록 하고, 교육감은 종합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의 학급당 적정 유아 수 유지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유아의 학습권과 쾌적한 교육환경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설></u>	<u>제12조의2(학급당 적정 유아 수에 관한 계획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조사를 바탕으로 3년마다 학급당 적정 유아 수의 기준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u> <u>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의 교육환경,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3년마다 학급당 적정 유아 수 유지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u> <u>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수립</u>

한 계획을 교육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획
수립, 제3항에 따른 보고의 방법
·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급당 적정 유아 수 계획 수립
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학년
도의 다음 학년도부터 적용한다.

나. 검토의견

□ **현행 「유아교육법」 제6조의2¹⁾는**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유아교육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 등을 위하여 매년 교육통계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교육 관련 지표 및 유아 수 추계 등 예측통계를 작성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²⁾.

또한, 현행법은 학급편성 등 수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고, 시행령 제16조³⁾에 따라 유치원의 학급 수와 학급당 최소 및 최대 유아 수는 유치원의 유형,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관할청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지역별로 적정한 학급 규모의 기준이 달라 학급 규모에 있어 지역 간 편차를 보이고 있음.

1) 「유아교육법」

제6조의2(교육통계조사 등) ① 교육부장관은 유아교육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유아교육 연구에 필요한 원생·교원·직원·유치원·교육행정기관 등에 대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하여 교육통계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유아교육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평가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통계조사(이하 이 조에서 “교육통계조사”라 한다)로 수집된 자료와 「통계법」 제3조에 따른 통계 및 행정자료 등을 활용하여 교육 관련 지표 및 학생 수 추계 등 예측통계를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 ⑨ (생략)

2)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7조의4(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의 작성 등) ①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이하 이 조에서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아에 관한 지표
2. 유치원의 교원 및 직원에 관한 지표
3. 유치원의 교육여건에 관한 지표

4. 유아 수 추계 및 예측

5. 그 밖에 유아교육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평가를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

② 교육부장관은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를 작성하기 전에 해당 지표 및 예측통계 작성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계획에는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의 개발·산출·관리·활용·공개 등과 관련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6조(학급 수 및 학급당 유아 수) 유치원의 학급 수와 학급당 최소 및 최대 유아 수는 유치원의 유형,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관할청이 정한다.

- 구체적으로 2025년도 기준 각 시·도교육청이 정한 학급당 유아 수를 살펴보면, 연령에 따라 3세는 12명에서 24명, 4세는 16명에서 26명, 5세는 19명에서 28명 수준으로 시·도별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시·도교육청별 유치원 학급 정원 기준]

(기준일: 각 연도 4월 1일, 단위: 명)

구분	2022년도			2025년도		
	3세	4세	5세	3세	4세	5세
서울	(공) 16	22	24	(공) 14	18	20
	(사) 16~20	22~24	24~28	(사) 16~20	22~24	24~28
부산	16	24	26	(공) 14	16	21
				(사) 14~16	22~24	24~26
대구	18	24	28	(공) 16	20	24
				(사) 18	24	28
인천	18	23	25	12	17	19
광주	16	22	24	16	20	20
대전	15	22	26	14	18	22
울산	16	22	25	14	18	20
세종	14~15	18~20	22~23	14	18	20
경기	14~18	22	26	14~18	20~22	24~26
강원	(공) 16	22	24	(공) 14	20	22
	(사) 16~24	22~26	24~28	(사) 16~24	22~26	24~28
충북	15	20	23	15	20	22
충남	15	19	23	(공) 14	18	20
				(사) 15	20	25
전북	14	18	22	(공) 14	16	18
				(사) 14~16	16~20	18~23
전남	15	19	21	(공) 14	18	20
				(사) 14~15	18~19	20~21
경북	16~18	22	24~26	16~18	20~22	24~26
경남	(공) 16	21	24	(공) 14	18	21
	(사) 19	25	28	(사) 19	24	26
제주	20	22	26	14	16	22

* 주: (공) 공립유치원, (사) 사립유치원

* 자료: 교육부

그러나, 학급당 적정인 유아 수는 유아의 학습권과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한 지표에 해당하므로 적정 학급 규모의 기준을 마련하고 학급당 적정 유아 수를 유지·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교육부장관에게 교육통계조사를 바탕으로 학급당 적정 유아 수의 기준에 관한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고시하도록 하고, 교육감은 종합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의 학급당 적정 유아 수 유지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유아의 학습권과 쾌적한 교육환경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개정안은 국가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교육기본법」⁴⁾의 취지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고, 학급당 적정 유아 수는 유아들이 쾌적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고 교원의 지도 효율성을 증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취지가 인정될 수 있을 것임.

□ 다만, 교육통계에 따르면 유치원 학급당 학생 수는 2025년도 기준 15.6명으로 저출생 추세에 따라 유치원을 비롯한 초·중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가 모두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고, 이를 반영한 듯 17개 시·도

4)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교육청 모두 유치원 학급 정원 기준이 규모의 차이는 있으나 2022년도 대비 2025년도에 낮아진 점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고 보임.

[연도별 학급당 학생 수 추이]

(단위: 명)

학교급	2010년	2015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유치원	21.0	20.0	16.7	16.1	16.7	16.1	15.7	15.6
초등학교	26.6	22.6	21.8	21.5	21.1	20.7	20.0	19.3
중학교	33.8	28.9	25.2	25.4	25.0	24.6	24.5	24.9
고등학교	33.7	30.0	23.4	23.0	22.6	22.9	23.4	23.4

* 자료: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자료 (<http://kess.kedi.re.kr>))

또한, 현행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1조⁵⁾는 국가교육위원회가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포함한 국가 교육발전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어, 국가교육위원회의 국가 교육발전계획과 개정안 제12조의2에 따라 3년마다 수립할 교육부장관의 학급당 적정 유아 수의 기준에 관한 종합계획 및 교육감의 학급당 적정 유아 수 유지에 관한 계획과의 관계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임.

5)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위원회의 소관 사무) ① 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1조에 따른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학제·교원정책·대학입학정책·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중장기 교육 제도 및 여건 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2조에 따른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의 고시 등에 관한 사항
3. 제13조에 따른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으로 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등) ① 위원회는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교육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 ⑧ (생략)

참고로, 개정안과 동일 취지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제2215317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2215319호)」이 발의되어 있으므로 이를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겠음.

< 참고자료1: 동일취지 일부개정법률안 조문별 비교 >

- 교육부는 국가교육위원회가 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안 내용은 국가교육위원회의 국가교육발전계획과 충돌하는 등 정책 일관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또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학급당 적정 유아 수는 교육부의 일률적인 기준 수립보다는 지역별 여건 및 현장 이해를 바탕으로 시·도별로 자체 기준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187

참고 1

동일취지 일부개정법률안 조문별 비교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15315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15317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215319호)
제12조의2(학급당 적정 유아 수에 관한 계획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 조사를 바탕으로 3년마다 학급당 적정 유아 수의 기준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의 교육환경,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3년마다 학급당 적정 유아 수 유지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수립한 계획을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획 수립, 제3항에 따른 보고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의2(학급당 적정 학생 수에 관한 계획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 조사를 바탕으로 3년마다 학급당 적정 학생 수의 기준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의 교육환경 등을 고려하여 3년마다 학급당 적정 학생 수 유지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수립한 계획을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획 수립, 제3항에 따른 보고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2(학급당 적정 인원 수에 관한 고시 등) ① 위원회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급당 인원 수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경우 학급당 적정 인원 수가 20명 이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고시한 사항의 이행 현황을 조사·분석할 수 있고, 그 결과를 학급당 적정 인원 수 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학급당 적정 인원 수 산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